

FTA 특혜관세 적용에 있어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과 검증사례 연구

The Judgment Criteria and Origin Verification Cases on “Exceptional Circumstances” in Application of FTA Preferential Tariffs

권순국* Soon-Koog Kwon

목 차

I. 서론	IV. 한·ASEAN FTA와 한·EU FTA 활용 기업의 실무적용상 유의점
II. FTA 특혜관세의 적용기준과 예외적인 경우의 판단기준	V. 결론
III. 협정상 예외적인 경우의 관련 검증사례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초록

국제물품매매 거래에서 불가항력은 당사자의 통제를 벗어나는 상황으로 인해 계약의 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책임소재와 분쟁해결을 위한 계약서의 명시조항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FTA 특혜관세 적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항력(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과 이와 관련된 한·ASEAN FTA와 한·EU FTA 검증과정에서 제기된 사례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동 FTA를 활용하여 특혜관세 혜택을 향유하고자 하는 무역기업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한·ASEAN FTA와 한·EU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혜관세 배제조항의 확인과 관세당국의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을 파악하여야 한다. 그리고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에 대한 유예기준 확인과 수출국 관세당국의 검증결과 회신기준을 확인하여

*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초빙교수

야 한다. 마지막으로 관세당국의 검증결과 회신 미요청 행위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주제어) FTA 특혜관세, 예외적인 경우, 불가항력, 신의성실의 원칙, 한·ASEAN FTA, 한·EU FTA

I. 서론

세계무역기구(WTO)의 발표에 따르면, 2017년 전세계 상품수출은 16조 3,0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0.0% 증가하였다. 이 중 한국은 10대 수출국 중 수출증가율 1위(15.8%)로 수출증감률은 전세계 수출증가율(10.0%)을 1.5배 이상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 교역순위에 있어 수출 6위, 수입 9위의 성과를 보였다.

이러한 가시적인 무역성과의 달성에 일조를 한 것이 FTA이다. FTA를 활용해 국내기업은 수출에 있어 자사 수출제품에 대한 상대국의 관세를 절감하여 가격경쟁력을 강화시켜 매출증대나 판로확대 등의 혜택을 누렸으며, 수입의 경우는 FTA 특혜관세 혜택을 통해 수입제품의 단가를 낮추는 효과를 얻었다. 이러한 수출과 수입에 있어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여부와 이에 대한 원산지증명이 중요하다.

한국의 수입자가 수입한 물품의 특혜관세 적용신청 과정에서 협정과 FTA 관세특례법상의 특혜관세 적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관세 혜택이 배제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와 예외적인 경우' 특혜관세 혜택이 적용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기업과 관세당국 간에 그 해석에 있어 다툼이 발생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와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한국의 기발효 FTA 협정과 FTA 관세특례법상에 별도의 정의가 없으므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불가항력(force majeure)¹⁾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 불가항력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인 무역거래에서 계약의 불이행이 당사자의 통제를 벗어나는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과 해결을 위한 계약서의 명시조항으로 널리 사용되어오고 있다.

국제물품매매거래에서 불가항력과 관련된 선행연구로 강이수(2002)는 국제거래에 있어서의 불가항력과 면책문제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박진숙(2010)은 신용장통일규칙상의 불가항력 면책조항의 적용에 따른 당사자들의 영향과 문제점을 검토하였고, 박세운

1) 불가항력 개념의 생성과 변천, 유사용어에 대해서는 강이수(2002), 「국제거래분쟁론 - 예방, 해결, 상사중재」, 삼성사, pp.235-238.; 이춘삼(2003), 「국제계약론」, 대왕사, pp.307-309 참조.

(2011)은 ICC 제정 통일규칙의 불가항력 조항의 차이를 비교 분석한 후 실무적 유의점을 제시하였으며, 서지민(2014)은 CISG상 불가항력조항의 법률상 쟁점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김성국·박명섭(2015)은 무역계약에서 불가항력을 중요한 지각된 위험으로 간주하고 신뢰주체인 계약당사자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실증분석 하였으며, 윤용석(2016)은 불가항력개념의 연원, 정의에 관한 이론 및 불가항력에 대한 각국의 적용례를 살펴보았으며, Schnitzer(2006)은 계약서의 표준거래조건으로서 불가항력조항에 대한 연구를 하였고, Schwenger(2008)은 CISG하의 force majeure와 hardship에 대한 비교 연구를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FTA 활용 무역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항력과 관련된 제반 문제점을 협정과 국내 법령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FTA 특혜관세 배제사유가 예외적인 경우, 즉 불가항력일 경우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한·ASEAN FTA와 한·EU FTA를 중심으로 협정상상의 법적 기준을 검토한 후 이와 관련된 주요 검증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ASEAN FTA와 한·EU FTA를 활용하여 특혜관세 혜택을 향유하고자 하는 무역기업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FTA 특혜관세의 적용기준과 예외적인 경우의 판단기준

1. FTA 특혜관세의 적용기준

FTA 특혜관세의 적용기준과 관련하여 본 연구의 사례 대상인 한·ASEAN FTA²⁾와 한·EU FTA³⁾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국내 기업이 동 FTA 대상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경우 적용되는 FTA 관세특례법상의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ASEAN FTA 부록 1 원산지규정을 위한 원산지증명 운영절차 제9조에 의하면, “특혜관세대우의 신청 목적상 수입자는 수입시에 원산지신고서와 증빙서류(즉 송장 그리고, 요구시 수출당사국에서 발행된 통과선하증권)를 포함한 원산지증명서와 수출

2) 한·ASEAN FTA는 2007년 6월 상품무역협정, 2009년 5월 서비스협정, 2009년 9월에 투자협정이 발효되었으며, 2017년 현재 FTA 활용률이 수출 46.1%, 수입 75.5%로 나타났다.

3) 한·EU FTA는 2011년 7월 잠정발효 후 2015년 12월 전체 발효되었으며, 2017년 FTA 활용률은 수출 85.5%, 수입 76.3%로 나타났다.

당사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기타 서류를 수입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한·EU FTA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9조에 의하면, “특혜관세대우 신청의 목적상 원산지증명은 수입당사자의 법과 규정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수입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제출된다. 해당 당국은 원산지증명의 번역을 요구할 수 있고 제품이 이 협정의 적용에 요구된 조건을 충족한다는 취지의 수입자의 진술서가 수입신고서에 수반되도록 요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FTA 관세특례법 제8조에 의하면, “수입자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시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수입자가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만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만약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의 보정(補正)을 신청하거나 경정(更正)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FTA 관세특례법 제9조).

2. 예외적인 경우의 판단기준

통상적으로 수입국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 요청에 대해 수출국 관세당국이 검증자료를 미제출하거나 검증결과의 회신이 지연될 경우 이는 협정과 FTA 관세특례법상에서 정한 특혜관세 배제 사유에 해당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justificable reason)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거나 수출국 관세당국이 동 결과의 회신 지연이 관세당국의 통제를 벗어난 예외적인 경우(exceptional circumstances)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점이 “정당한 사유와 예외적인 경우”라 함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했을 때 불가항력⁴⁾으

4) 영국의 판례 중에 불가항력의 정의를 시도한 판례인 *Le Beupin v. Crispin* 사건(1920년)에서 불가항력이라 함은 인간의 힘으로 지배할 수 없는 사유로서 계약의 불이행을 충분히 정당화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예로 전쟁, 홍수, 전염병 발생, 노동자의 스트라이크 등이 있다(19020) 2. K.B. 714. 강이수(2002), 전제서, p.235.; 이춘삼(2003), 전제서, p.308.

로 보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 불가항력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통제를 벗어나는 상황으로 무역계약의 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불가항력은 주로 무역계약의 명시조건 중 선적조건(terms of shipment)과 관련하여 매도인이 약정품을 매수인에게 정해진 기간 내에 인도하지 못하는 선적불이행(non-shipment), 지연선적(delayed shipment) 등이 천재지변(act of god) 등에 의해 발생할 경우 면책을 받기 위해 계약서 이면의 일반거래조건협정서에 불가항력의 세부적인 사유를 열거하고,⁵⁾ 그 다음 조항에 불가항력적인 사유의 지속으로 인해 지연선적⁶⁾이 계속 이어질 경우 선적기간의 연장 문제와 계약해제의 선택권에 관한 조건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에 반해 FTA 특혜관세 적용상 정당한 사유와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한·ASEAN FTA⁷⁾와 한·EU FTA⁸⁾를 포함한 협정상에 구체적인 정의가 별도로 없어 수입자와 관세당국 간에 이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 즉 예외적인 경우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도 있고, 배제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
- 5) 불가항력 조항을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The seller shall not be responsible for the delay in shipment due to **force majeure, including mobilization, war, strikes, riots, civil commotion, hostilities, blockade, requisition of vessels, prohibition of export, fires, floods, earthquakes, tempest and any other contingencies**, which prevent shipment within the stipulated period. In the event of any of the aforesaid causes arising, documents proving its occurrence or existence shall be sent by the seller to the buyer without delay.
- 6) 불가항력으로 인한 지연선적 관련 대표적 판례로 In fairclough Dodd & Jones Ltd. v. J.H. Vantol Ltd. 사건에서 이집트산 홍화씨유를 12월과 1월 동안 알렉산드리아에서 로테르담까지 직송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① 선적을 저해하는 전쟁 또는 다른 특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하고, ② 만약 선적을 지연시키는 다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선적기간이 2개월 연기된다는 내용의 2개의 불가항력조항을 넣었다. 그런데 이집트정부가 12월부터 1월 3일까지 물품의 선적을 금지하여 선적이 1월 31일에 된 것에 대해 매수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매도인은 이에 대해 ②번 조항에 의하여 선적기간이 연기되었다고 항변하였다. 상원은 불가항력조항의 해석상 매도인의 항변은 옳다고 판시하였다(1957) 1 W.L.R 136]. 강이수, 상계서, p.252.
- 7) Where the certificate of origin is submitted to the customs authority of the importing Party after the expiration of the time-limit as stated in paragraph 1 for its submission, such certificate of origin shall be accepted when the failure to observe such time-limit results from **force majeure or other valid causes beyond the control of the producer and/or exporter**. 한·ASEAN FTA 제10조 제2항
- 8) If in cases of reasonable doubt there is no reply within 10 months of the date of the verification request or if the reply does not contain sufficient information to determine the authenticity of the document in question or the real origin of the products, the requesting customs authorities shall **except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refuse entitlement to the preference. 한·EU FTA 제27조 제7항

Ⅲ. 협정상 예외적인 경우의 관련 검증사례

1. 한·ASEAN FTA 사례

1) 수출자 사무실 화재로 인한 원산지검증 불가 사례⁹⁾

(1)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2008년 1월 26일부터 2012년 2월 15일까지 청구법인의 그룹계열사인 체약상대국 소재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한·ASEAN FTA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고 통관지 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2012년 6월 4일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이 의심되는 쟁점물품에 대해 동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 대해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한 후, 서면조사 결과만으로는 원산지를 확인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2013년 1월 4일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원산지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검증을 요청하였고, 동 관세당국은 2013년 6월 25일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출자 사무실의 화재로 인한 원산지증빙자료의 소실을 이유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 검증결과를 바탕으로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2013년 11월 12일 청구법인에게 협정관세율(0%)과 기본관세율(3%)의 차율에 해당하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년 2월 6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먼저 청구법인은 수출자의 사무실 화재로 인한 불가항력으로 검증을 위한 자료 미제출은 FTA 관세특례법상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FTA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위법하고, 화재는 국세기본법상의 가산세 면책 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신뢰하여 협정관세적용을 신청하였는바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한·ASEAN FTA 원산지증명 절차와 FTA 관세특례법에 따라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게 국제 간접검증을 요청한 결과 동 관세당국의 국제 간접검증 결과에 원산지 정확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있지 않다고 보아 쟁점물품

9) 조심2014관0170, 2014.08.21

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3)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법인은 수출자의 사무실 화재로 인한 불가항력으로 검증을 위한 자료 미제출은 FTA 관세특례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FTA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은 처분청의 검증요청에 대해 체약상 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자의 사무실 화재로 인하여 검증을 위한 기초 자료가 소실 되어 필요한 자료를 제출 받을 수 없어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검증이 불가하다고 통보받았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처분한 건으로 수출자의 화재로 인하여 원산지결정기준에 부합하는 원시자료가 소실되어 쟁점물품 원산지증명서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처분청이 수출자 사무실 화재로 인한 원산지증빙서류의 소실 등을 이유로 원산지검증이 불가하다고 회신한 국제 간접검증 결과를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아 FTA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의 예외 사례¹⁰⁾

(1)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체약상대국 소재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할당관세율(2%)을 적용한 관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통관지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를 받았다. 이 후 청구법인은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를 소급하여 발급 받은 다음 2010년 12월 10일 한·ASEAN FTA 협정관세(협정관세율 0%) 사후적용을 신청하면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였고, 통관지 세관장은 청구법인이 신고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하였다. 처분청은 2013년 6월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여부를 서면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는 한·ASEAN FTA 및 FTA 관세특례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이 환급받은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0) 조심2014관0290, 2016.01.07

(2) 당사자의 주장

먼저 청구법인은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를 사후적용 신청하면서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으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을 기준으로 제출기한(6개월) 만료 전에 물품이 수입되었으므로 특례기간을 제외하여 유효기간을 계산하여야 하고, 이 경우 원산지증명서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기 이전에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경우에만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에서 특례기간을 제외한다는 것이지,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이후에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경우까지 특례기간을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한·ASEAN FTA 규정을 문자대로 해석·적용하지 아니하고, 물품의 수입항 도착 전/후에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었는지 여부로 구분하여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제한한 것은 조약의 유효해석원칙과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해석으로 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원산지증명서가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이후에 발급되었다는 이유로 유효기간 계산시 특례기간을 제외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특혜관세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한·ASEAN FTA 및 FTA 관세특례법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한·ASEAN FTA상의 예외규정은 원산지증명서가 불가항력 등의 이유로 유효기간 내에 수입국 관세당국에 제출되지 못하는 경우 그 제출의무를 유예시키는 것으로서 불가항력 등의 사유가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이내에 존재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계산시 특례기간을 제외시켜 주기 위해서는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기 이전에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어 유효기간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이어야 하고, 이 건과 같이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할 당시에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아 그 유효기간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제외시켜야 할 특례기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로부터 유효기간 6개월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 건 원산지증명서는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시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그 차액을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만일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이후에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경우에도 유효기간 기산일을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다음 날”로 소급하여 그 날부터 수입신고일 또는 협정관세 적용신청 일까지의 기간을 유효기간에서 제외할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무력화될 뿐만 아니라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무한히 연장되어 결과적으로 수출자의 자료보관 의무기간이 경과하게 되어 원산지검증이 불가능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3) 조세심판원 판단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시 제출하는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신고일’ 또는 ‘협정관세 적용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하나,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에는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을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에서 제외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구의 해석상 반드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이내 즉,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기산일과 만료일 사이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 적용되는 것이고, 이 건의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쟁점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외하여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을 계산하여야 하는 점과 그 기간을 제외할 경우 이 건 원산지증명서는 유효기간이 연장되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당시 한·ASEAN FTA상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2. 한·EU FTA 사례

1) 원산지검증 요청 미통지 및 불완전 통지 사례¹¹⁾

(1)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건설기계 판매 및 임대를 하는 업체로서 체약상대국(독일) 소재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한·EU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처분청은 관세청장을 통하여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원산지확인(검증)을 요청하였고, 회신기한이 임박함에도 회신이 없자 검증독촉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회신기한을 경과하여 쟁점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회신함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1) 조심2015관0296, 2016.06.21

(2) 당사자의 주장

먼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 요청을 한 후 그 사실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제시한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기재된 수령자는 당시 청구법인에 근무하는 직원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통지 공문은 배달사고로 청구법인이 아닌 다른 곳에 배달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간접검증을 하면서 이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 청구법인이 위 통지 공문을 송달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간접검증을 실시한다는 내용만을 담고 있을 뿐 간접검증의 절차, 기한, 간접검증의 효력 등에 대하여 전혀 알리지 않아 불완전한 사전통지이므로 사전통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장관은 한·EFTA FTA의 회신기간을 10개월에서 15개월로 연장하기로 합의(2015.5.1. 채택)하였고, 이를 적용하여 종전 협정관세 적용 배제처분의 취소가 가능하다는 공문을 관세청장에게 발송한 바 있어 이 건의 경우에도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회신기한 10개월을 경과하였지만 15개월 이내에 쟁점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한다는 회신을 하였으므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 입장에서 처분청이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였다는 사실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원산지확인을 요청하였다는 사실을 공문을 통하여 통지하였고, 동 공문이 청구법인의 직원이 수령하였음을 입증하는 “우편물 배달증명서” 를 교부받았으며, 원산지확인 요청사실 통지 이전에 청구법인의 주소로 자료제출 요구 및 원산지검증 서면조사 통지를 한 바 있고 청구법인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 제출한 사유서에 공문을 수령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그리고 청구법인이 위 공문을 송달 받았다고 하더라도 간접검증의 절차, 기한, 간접검증의 효력 등에 대하여 알리지 않은 불완전한 사전통지이므로 사전통지가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적법하게 통지한 것이고, 한·EU FTA 발효 전·후로 원산지 검증 절차에 대하여 많은 홍보가 이뤄졌음에도 청구법인이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또한, 한·EU FTA와 한·EFTA FTA는 독립된 별개의 협정이므로 한·EFTA FTA의 회신기간 연장 합의를 이유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3)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법인은 한·EFTA FTA의 회신기간이 10개월에서 15개월로 연장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한·EU FTA와 한·EFTA FTA는 계약상대국이 다른 독립된 별개의 FTA이므로 한·EFTA FTA의 회신기간 연장 개정내용이 한·EU FTA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FTA 관세특례법상 원산지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회신기한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데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은 처분청의 검증결과 회신독촉에도 불구하고 회신기한 경과를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원산지확인요청 사실 통지’를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에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을 요청하였다는 내용의 통지를 발송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고려했을 때 원산지확인요청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여부 사례¹²⁾

(1)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계약상대국 소재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 수입하면서 한·EU FTA에 따른 협정관세(협정관세율 0%)를 적용받아 수입통관 하였다. 처분청은 관세청을 통하여 수출국 관세당국에 쟁점물품의 원산지검증을 요청하여 쟁점물품이 원산지물품에 해당하고 수출자가 유효한 인증수출자임을 통보받았으나 검증결과가 회신기한을 경과하여 회신되었다는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먼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수출국 관세당국에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요청을 한 후 회신기한 만료일을 불과 28일 앞둔 시점에 회신독촉공문을 발송하는 느장대응을 함으로써 수출국 관세당국의 회신지연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만약 처분청이 수출국 관세당국에 원산지 검증결과와 회신이 지연되지 않도록 여러 차례 독촉을 하는 등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다면 수출국 관세당국은 회신기한을 1개월 또는 2개월 경과된 이후가

12) 조심2015관0277, 2016.05.17

아니라 회신기한 이내에 쟁점물품이 원산지물품에 해당되고 해당 수출자들이 유효한 인증수출자임을 회신하였을 것이다. 결국 이는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처분청의 நட장대응으로 인하여 수출국 관세당국의 회신이 지연된 것이므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장기간 EU 역내에서 사용된 후 우리나라로 수출된 중고물품이며 수출자가 생산자가 아니므로 협정에 따른 원산지 불충족 위험이 높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원산지검증에 착수하여 10개월 이내 원산지확인 결과를 회신하여 줄 것을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에 요청하였으나, 예외적인 경우로 볼 수 있는 사유가 없음에도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은 회신기간을 경과하여 회신하였으므로 특혜관세 배제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நட장대응으로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이 지연을 회신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에 국제 원산지간접검증을 요청하고 그 사실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하는 등 제반절차를 하자 없이 이행하였다. 그리고 원산지검증 요청 이후 계약상대국에 회신을 독촉하거나 연락을 하여야 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회신기간 만료 전에 기간 도래 안내 및 기간내 미회신시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됨을 알리는 서한을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에 보냈으나 동 관세당국은 회신기간을 경과하여 그 결과를 회신하였다고 주장하였다.

(3)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회신기한을 불과 28일 앞둔 시점에 회신독촉공문을 발송하는 நட장대응을 함으로써 수출국 관세당국이 회신지연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에 국제 원산지간접검증을 요청하였고 그 사실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으며, 이후 회신기한이 임박하자 그 사실 등을 알리며 회신을 독촉하는 내용의 서한을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에 보냈을 뿐만 아니라, 계약상대국의 지연회신사유에 대하여도 동 관세당국에 문의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한·EU FTA 및 FTA 관세특례법령에 따라 원산지 검증절차를 충실하게 이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IV. 한·ASEAN FTA와 한·EU FTA 활용기업의 실무적용상 유의점

1. 협정별 특혜관세 배제조항의 확인

본 연구 사례대상인 한·ASEAN FTA와 한·EU FTA상의 특혜관세 배제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ASEAN FTA 부록 1 원산지규정을 위한 원산지증명 운영절차 제17조에 의하면, “이 부록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물품이 부속서 3의 원산지규정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이 부록의 관련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수입당사국은 그 법령에 따라 특혜세우 신청을 배제하거나 관세를 추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한·EU FTA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9조에 의하면,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검증요청 일부 10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거나, 그 회신이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제품의 진정한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혜자격 부여를 거부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 FTA상의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원산지증명이 초기에 부정으로 수입되었던 물품에 대하여 그 이후 제시되었거나 원산지증명이 비당사자 수출자에 의해 발행되었을 경우와 수입자가 기간 내에 수입당사국 관세당국에 원산지증명을 제시 못한 경우에는 검증없이 특혜관세가 배제된다.¹³⁾

따라서 한·ASEAN과 한·EU FTA를 활용하고자 하는 무역기업은 협정상의 특혜관세 배제조항 기준을 정확하게 검토하고, 만약 특혜관세 배제 사유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될 경우 이에 대한 정당한 소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2. 관세당국의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의 파악

본 연구의 대상사례에서 보듯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입자, 계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는 협정관세 적용이 제한된다. 그리고 조사를

13) 이영달(2016), 「FTA 협정 및 법령해설」, 세인북스, p.586.

받는 자의 부도·폐업·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협정관세 적용이 제한된다.¹⁴⁾

그리고 한·EU FTA를 포함한 협정상에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해석에 있어 기업과 관세당국 간에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반적으로 거래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넘어선 비정상적이고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 수 있으며, 거래당사자가 주의의무를 최대한 기울였음에도 그 결과에 대해 피할 수 없는 경우로 해석되어야 한다. 관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에 대해 질의한 것에 대한 회신 내용을 산하 세관장에게 시달한 바에 의하면, 기타 지연회신이 있는 경우 수출자 및 수출국 관세당국의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인지의 여부,¹⁵⁾ 수출자와 수출국 관세당국의 귀책사유, 검증대상 물품에 대한 검증의 특수성, 회신지연 상황에 대한 중간통보 여부 등 검증사안의 여러 특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구체적인 사안별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¹⁶⁾

3.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유예기준의 확인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의 예외 사례에서 보듯이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 동 증명서의 유효기간 계산을 어떤 기준에 따라 할 것인지에 대해 기업과 관세당국 간에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FTA 특혜관세 적용과정에서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할 경우 협정관세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보세 물류창고에서 장기 보관 후 수입신고하는 물품의 경우 협정관세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경우나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수입항에 물품이 도착하거나,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에 따른 운송지연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물품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었던 기간을 유효기간 계산시 제외함으로써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FTA 관세특례법을 개정하였다.¹⁷⁾

14) FTA 관세특례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동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1호

15) 체약상대국 관세당국(검증수행기관)이 검증결과 회신이 지연된 사유에 대하여 사무실 이전 및 심각한 기술적 문제에 따른 업무 적체로 인한 것으로 이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해명서를 송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협정관세 배제를 하였다(조심2014관0424).

16) 조심2015관0296; 이종익·박병목(2016),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세경사, p.244.

17) 조심2014관0290

따라서 수입자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당시에 갖추어야 할 원산지증명서는 수입 신고일을 기준으로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는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운송지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소멸된 날까지의 기간은 유효기간을 계산할 때 제외한다.¹⁸⁾

4. 수출국 관세당국의 검증결과 회신기준의 확인

원산지검증 요청 미통지 및 불완전 통지 사례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여부 사례에서 보듯이 예외적인 경우로 볼 수 있는 사유가 없음에도 수출국 관세당국이 원산지검증 회신기한내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않을 경우 FTA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되고 관세 등이 과세 처분된다. 한·ASEAN FTA와 한·EU FTA의 원산지검증 방식은 원칙적으로 간접 검증 방식을 따르고 필요한 경우 직접검증이 가능하거나(ASEAN), 체약상대국의 검증과정에 참관이 가능하다(EU).

이러한 간접검증 방식에서 중요한 사항이 체약상대국 검증기관에 검증요청을 한 경우, 동 검증기관은 협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검증결과를 반드시 회신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결과를 미회신 하거나 회신기간 경과 후 통보를 할 경우 수입국의 관세당국은 협정과 FTA 관세특례법 등과 같은 국내 관련법상의 규정 위반을 근거로 특혜관세를 배제하고 있다.¹⁹⁾

협정과 FTA 관세특례법상 수입국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 요청에 대한 수출국 관세당국의 검증결과 회신기간은 ASEAN 회원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는 ASEAN 회원국의 관세당국이 원산지확인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필요한 경우 확인요청이 접수된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 연장 가능)이내, EU 회원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는 원산지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10개월 이내²⁰⁾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²¹⁾

18)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제4조 제6항

19) 권순국(2017), “FTA 원산지검증상 체약상대국의 검증결과 회신에 관한 법적 기준과 검증사례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8권 제4호, p.154.

20) 2016년 7월 1일 기획재정부령 제566호로 전부개정된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에서는 10개월을 15개월로 연장하였다.

21)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37조

5. 검증결과 회신 미독촉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여부 확인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여부 사례에서 보듯이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수출국 관세당국에 원산지 검증결과 회신이 지연되지 않도록 독촉하였더라면 정해진 기간 내에 검증결과가 회신되었을 것이라 주장하면서 이는 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경우라 주장하였다. 동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이다. 이에 대해 관세법상에서는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나 납세자가 그 의무를 수행할 때에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²²⁾

상기 사례의 경우 처분청은 수출국 관세당국에 국제 원산지 간접검증을 요청하였고 그 사실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는데, 이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한 사실을 수입자에게 알려야 하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회신 내용과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수입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FTA 관세특례법상²³⁾의 과세관청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검증결과 회신을 독촉하는 서한을 보내고 회신지연 사유에 대하여 수출국 관세당국에 문의를 하는 등 협정상에는 없지만 과세관청으로서 의무를 충실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

V. 결론

본 연구는 ASEAN과 EU에서 수입한 물품의 특혜관세 적용과정에서 정당한 사유와 예외적인 경우, 즉 불가항력과 관련된 한·ASEAN FTA와 한·EU FTA 협정상의 법적 기준을 검토하고 이와 관련된 주요 원산지 검증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한·ASEAN FTA와 한·EU FTA를 활용하여 특혜관세 혜택을 향유하고자 하는 무역기업에 다음과 같은 실무적 유의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협정상의 특혜관세 배제 조항을 확인하고, 특혜관세 배제 사유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될 경우 이에 대한 정

22) 과세관청에 적용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1980년 대법원 판결(대법원1980.6.10. 선고80누6판결)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정재완(2017), 「관세법」, 도서출판 청람, p.51.

23) FTA 관세특례법 제19조 제2항

확한 소명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즉,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충족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원산지증빙서류를 보관하여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에 대비해야 한다. 둘째,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관세당국의 판단기준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협정상에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별도의 예시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거래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넘어선 비정상적이고 불가능한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셋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에 대한 유예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수입항에 물품이 도착하거나,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에 따른 운송지연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물품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었던 기간을 유효기간 계산시 제외하고 있다. 넷째, 수출국 관세당국의 검증결과 회신 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 간접검증 방식하에서 체약상대국 검증기관에 검증요청을 한 경우 검증기관은 협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검증결과를 반드시 회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특혜관세를 배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관세당국의 검증결과 회신 미요청 행위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원산지 간접검증 요청 사실에 대한 통지, 검증결과의 회신 독촉 서한 발송과 회신지연 사유에 대한 수출국 관세당국에 문의 등과 같은 과세관청의 행위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된다.

원칙적으로 FTA 협정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물품이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물품임을 원산지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수입국 세관에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원산지증빙서류에 문제가 있을 경우 협정관세 혜택이 배제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경우가 발생할 경우 협정관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한편, 본 연구는 FTA 활용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항력과 관련된 법적 기준과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FTA 협정과 국제물품매매 관련 법상의 불가항력에 대한 규정과 사례를 상호 비교 검토하여 동 분야의 연구를 확장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이수(2002), 「국제거래분쟁론 - 예방, 해결, 상사중재 -」, 삼영사, pp.233-253.
- 권순국(2017), “FTA 원산지검증상 계약상대국의 검증결과 회신에 관한 법적 기준과 검증사례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8권 제4호, pp.141-158.
- 김성국·박명섭(2015), “무역계약에서 불가항력 인식이 지속가능한 거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40권 제4호, pp.41-64.
- 박세운(2011), “ICC 통일규칙의 불가항력 규정에 대한 연구,” 「무역보험연구」, 제12권 제2호, pp.97-113.
- 박진숙(2010), “신용장통일규칙상의 불가항력 면책조항 연구,” 「상품학연구」, 제28권 제6호, pp.61-72.
- 서지민(2014), “국제적인 통일법상의 불가항력조항의 법적쟁점,” 「기업법연구」, 제28권 제2호, pp.469-503.
- 윤용석(2016), “불가항력에 관한 일고찰,” 「재산법연구」, 제33권 제1호, pp.139-162.
- 이영달(2016), 「FTA 협정 및 법령해설」, 세인북스, p.586.
- 이종익·박병목(2016),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세경사, p.244.
- 이춘삼(2003), 「국제계약론」, 대왕사, pp.306-311.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625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680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628호]
- 정재완(2017), 「관세법」, 도서출판 청람, p.51.
- Abreu, M. D.(2013),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Staff Working Paper*, ERSD-2013-05, World Trade Organization, pp.1-64.
- Augier, P., Gasiorek, M. and Lai-Tong, C.(2005), The Impact of Rules of Origin on Trade Flows, *Economic Policy*, 20(43), pp.567-624.
- DiMatteo, L. A.(2014), *International Sales Law: A Global Challen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ramework Agreement on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mong the Government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Member Countries of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vailable from http://fta.go.kr/webmodule/_PSD_FTA/asean/1/20100413_asean.pdf
-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of the One Part, and the European Union and its Member States, of the Other Part, available from http://www.fta.go.kr/webmodule/_PSD_FTA/eu/doc/Full_Text.pdf
- Heetkamp, Anne van de and Tusveld, R.(2011), *Origin Management: Rules of Origin in Free Trade Agreements*, Springer.
- Hollenberg, J.(2013), *Rules of Origin in the WTO and in other Free Trade Agreements: An Overview*, GRIN Verlag.
- Inama, S.(2009), *Rules of Origin in International Trad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chnitzer, S.(2006), *Understanding International Trade Law*, Law Matters Publishing, pp.39-43.
- Schwenzer, I.(2008), “Force Majeure and Hardship in International Sales Contracts,” *Victoria University of Wellington Law Review*, Vol.39, pp.709-725.
- Schwenzer, I., Fountoulakis, C. and Dimsey, M.(2012), *International Sales Law: A Guide to the CISG*, Hart Publishing.
- Tanaka, A.(2011), World Trends in Preferential Origin Certification and Verification, *WCO Research Paper*, 20, pp.1-30.
- Treitel, G. H.(2004), *Frustration and Force Majeure*, Sweet & Maxwell.
- World Trade Organization(2018), *World Trade Statistical Review 2017*, WTO, pp.1-83.

The Judgment Criteria and Origin Verification Cases on “Exceptional Circumstances” in Application of FTA Preferential Tariffs

Soon-Koog Kwon

Abstract

The force majeure i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has been widely used regarding liability and settlement of disputes in the event of breach of contract due to circumstances beyond the control of the part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judgment criteria and cases concerning on force majeure in the application of FTA preferential tariffs.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paper uses a literature review and case analysis on exceptional circumstances under the Korea · ASEAN FTA and the Korea · EU FTA. This study, this paper provides several implications for companies seeking preferential tariffs regarding the Korea · ASEAN FTA and the Korea · EU FTA. Korean companies are subject to the following: confirm the denial article of FTA preferential tariffs stipulated in the Korea · ASEAN FTA and the Korea · EU FTA, consider the judgment criteria on exceptional circumstances of customs authorities, confirm the extension criteria on the validity period of certificate of origin, confirm the reply criteria of verification result of the customs authorities of the exporting country, and confirm the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good faith for unrequested action on reply of verification result of customs authorities.

〈Key Words〉 FTA Preferential Tariff, Exceptional Circumstances, Force Majeure, The Principle of Good Faith, Korea · Asean FTA, Korea · EU FTA